

【 3 】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사유

- 법률 제9103호(2008. 6. 5.) 및 대통령령 제21096호(2008. 10. 29.)로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시행시 법조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조항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부분을 정비·개선하여 건축민원사무의 신속 처리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심의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시 교통분야 전문위원이 심의참석 위원수의 1/4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4조 제1항)
- 나.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시 법조항 등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례상의 조문 개정하고자 함. (안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40조, 제43조)

- 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의 공개모집 선정방법 및 지정절차, 건축지도원의 임명 등 허가권자 및 지정·임명권자의 과도한 재량성과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라.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건축신고한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7조)
- 마.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된 2006년 5월 9일전에 건축한 주택·근린생활시설용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학교 등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3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 “별표 3”)
- 바.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등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별표15 제1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완화 적용하고자 함.
(안 제43조)
- 사.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5인”을 “40인”으로 하고, “방법으로 선정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영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제3조의2 및 제5호 규정”을 “영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로, 동조제2항의 “영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4항제5호”로, 동조제3항의 “법 제7조”를 “법 제10조”로,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동조제5항제1호의 “법제9조, 제10조”를 “법 제14조, 제16조”로, 동항제2호의 “용도변경 사항이나 위치 변경사항”을 “용도변경 또는 위치 변경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제7조”를 “법 제10조”로, “법제8조”를 “법 제11조”로,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제7조”를 “법제10조”로,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법제8조제6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7조”를 “법 제10조”로, 동조제2항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8조의3”을 “법 제13조”로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의를 필요로 하는”을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8조의3”을 “법 제13조”로, 동조제2항제2호중 “법 제8조제8항에 의한 허가기간 연장승인 신청시 보증서에 기간을 연장”을 “법 제11조제7항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간연장 신청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11조”를 “법 제17조”로, “법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4조 · 제15조 및 제72조”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로, “사람”을 “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2항중 “법 제15조”을 각각 “법 제20조”로, “영 제15조제5항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4호”로 하고, 동조제2항 제5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삭제한다.

제27조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하고,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건축물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허가권자가 사용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 및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변경 신고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 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 승인신청한 건축물.

제28조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동조제1호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동조제2호중 “법 제14조제1

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건축허가”를 “허가”로 동조제3호중 “법 제15조”를 “법제20조”로, “건축허가”를 “허가”로, 동조제4호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지정한다”를 “선정하되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방법 등은 건축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법 제23조”를 “법제27조”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를 “업무대행자”로 동조제2항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업무대행”으로 동항제3호중 “법제18조”를 “법 제22조”로, “40퍼센트를 지급한다”를 “40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사람”을 “자”로 하고, 동항제5호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기 각호 어느 하나의 동등이상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사람”을 “건축분야의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 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건축분야의 공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8. 양주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제33조제1항 및 제3항중 “법제32조”를 “법제42조”로 한다.

제34조중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호”를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동항제2호”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5조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법 제53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38조중 “영 제113조”를 “영 제27조의2”로 한다.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영 제113조”를 “영 제2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법 제48조”를 “법 제56조”로, 동항제2호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40조중 “법 제50조”를 “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동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부과한다.

동조제2항중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로,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40조 관련 [별표 3]제1호가목 및 나목중 “3.0미터이상”을 “3미터이상”으로 하며 동호 다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다. 당해용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당해용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 수련시설대상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3미터 이상 · 위(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정하지 아니한 모든 건축물(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미터 이상

[별표 3] 제2호 다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p>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p>2미터 이상</p>
<p>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 수련시설대상 건축물 	<p>2미터 이상</p>
<p>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p>바. 그 밖의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1.5미터 이상 · 위(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정하지 아니한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실·과장	건축과장
	직위·성명	김 용 환
	담당·팀장	건축행정팀장
	직위·성명	전 언 철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 <u>2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선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u> ②~④ (생략)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 <u>4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선출의 방법으로 한다.</u>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대상) ①영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u>제3의2호 및 제5호</u> ----- 한 사항 ② 영 제5조제4항제4호 ----- 한다. 1.~2. (생략) ③----- <u>법 제7조제2항에 의한</u> ----- 및 <u>법 제8조제5항의</u> ----- 관한 심의. ④ (생략) ⑤ (생략) 1. ----- <u>법 제9조, 제10조 및 영 제12조</u> 규정에 의한 -----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2. ----- <u>용도변경 사항이나 위치변경 사항.</u> 3. (생략)	제8조(심의대상) ①영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u>제4호 및 제6호</u> ----- 한 사항 ② 영 제5조제4항제5호 -----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0조제2항에 의한</u> ----- 및 <u>법 제11조제4항의</u> ----- 관한 심의.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u>법 제14조, 제16조 및 영 제12조</u> 규정에 의한 -----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2. ----- <u>용도변경 또는 위치변경 사항.</u> 3. (현행과 같음)
제16조(설치) ① <u>법 제7조에 의한</u> ----- 있거나 <u>법 제8조의</u> ----- 할 경우, <u>법 제8조의2</u> 규정에 의한 -----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설치) ① <u>법 제10조에 의한</u> ----- 있거나 <u>법 제11조의</u> ----- 할 경우, <u>법 제12조</u> 규정에 의한 -----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 ① <u>협의회는 법 제7조의</u> ----- 와 <u>법 제8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전 법 제8조제6항 각 호, 시행령 제10조제1항의</u> 내용을 심의한다. ② (생략)	제17조(심의) ① <u>협의회는 법 제10조의</u> ----- 와 <u>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전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영 제10조제1항의</u> 내용을 심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등) ① <u>법 제7조의</u> ----- 문서로 요청한다. ② <u>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의 2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는</u> ----- 준용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u>법 제10조의</u> ----- 문서로 요청한다. ② <u>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는</u> ----- 준용한다.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u>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u> 규정 ----- 의한다.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u>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u> 규정 ----- 의한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u>법 제8조의3제2항</u> 규정에 -----한다. 다만,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u>법 제13조제2항</u> 규정에 -----한다. 다만,

현행	개정안
<p>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②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 같다.</p> <p>1. (생략)</p> <p>2. ----- 법 제8조제8항에 의한 허가기간 연장승인 신청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p> <p>3.~4. (생략)</p>	<p>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법 제11조제7항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간연장 신청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 하는 사람은 ----- 한다.</p>	<p>제25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 하는 자는 ----- 한다.</p>
<p>제2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5조제2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 말한다.</p> <p>1.~ 4. (생략)</p> <p>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p>	<p>제2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법 제20조제2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 말한다.</p> <p>1.~ 4. (현행과 같음)</p> <p>5. (삭제)</p>
<p>제27조(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 건축물은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건축물로 한다.</p>	<p>제27조(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신설)</p>	<p>1. 법 제27조 및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p> <p>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변경 신고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한 건축물.</p>
<p>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p> <p>1. 법 제8조의 규정에 ----- 확인(제10조 규정에 ----- 포함한다.)</p>	<p>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p> <p>1. 법 제11조의 규정에 ----- 확인(제16조 규정에 ----- 포함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 확인</p> <p>3.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 확인</p> <p>4. 법 제18조의 규정에 ----- 확인. 다만, ----- 제외한다.</p>	<p>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 대상 건축물의 허가 전 ----- 확인</p> <p>3.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 확인</p> <p>4. 법 제22조의 규정에 ----- 확인. 다만, ----- 제외한다.</p>
<p>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 (생략)</p> <p>1. (생략)</p> <p>2. 제28조제4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는 -----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한다.</p> <p>3. 업무대행자로 -----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의 -----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8조제4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는 -----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방법은 건축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정한다.</p> <p>3. 업무대행자로 ----- 시행규칙 제21조의 -----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 지급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 의한다.</p> <p>1. ~ 2. (생략)</p> <p>3.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 40퍼센트를 지급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 정한다.</p>	<p>제3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 지급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 의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 40퍼센트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 정한다.</p>
<p>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 해당하는 사람 -----임명한다.</p> <p>1. 건축직렬 ----- 사람.</p> <p>2. 건축사 또는 -----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 사람.</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 사람.</p> <p>5.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기 각호 어느 하나의 동등 이상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p> <p>(신설)</p>	<p>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 해당하는 자 -----임명한다.</p> <p>1. 건축직렬 ----- 자.</p> <p>2. 건축사 또는 ----- 자.</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 자.</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 자.</p> <p>5. 건축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p> <p>6. 건축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7. <u>건축분야의 공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u> 8. 양주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u>법 제32조제1항</u>의 규정에 -----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산정하는 면적 <u>법 제32조제1항</u> 규정에 ----- 없다. 1. (생략) 2. 지표면으로부터 ----- 면적을 <u>법 제32조제1항</u>의 규정 ----- 산정할 수 있다. 3. ~ 4. (생략)</p>	<p>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u>법 제42조제1항</u>의 규정에 -----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산정하는 면적 <u>법 제42조제1항</u> 규정에 -----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지표면으로부터 ----- 면적을 <u>법 제42조제1항</u>의 규정 ----- 산정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p>
<p>제34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u>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호</u> 규정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와 같다.</u> 1. ~ 2.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p>	<p>제34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u>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u> 규정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u>법 제49조제1항</u> 및 영 제80조 ----- 없다. 1. ~ 5. (생략)</p>	<p>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u>법 제57조제1항</u> 및 영 제80조 ----- 없다. 1. ~ 5. (현행과 같음)</p>
<p>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u>법 제51조제3항</u>의 단서 ----- 도로의 너비를 산정하여 <u>법 제51조제3항</u> 본문의 -----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생략)</p>	<p>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u>법 제60조제3항</u>의 단서 ----- 도로의 너비를 산정하여 <u>법 제60조제3항</u> 본문의 -----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략) 1. ~ 3. (생략) ② (생략) ③<u>법 제53조제4항</u> 규정에 ----- 건축물에 13 대해 <u>법 제53조제1항</u> 내지 ----- 한다.</p>	<p>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u>법 제61조제4항</u> 규정에 ----- 건축물에 대해 <u>법 제61조제1항</u> 내지 -----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략)</p> <p>제3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 로 한다.</p> <p>제3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용) ①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 한다.</p> <p>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 한다.</p> <p>1. ~ 5. (생략)</p> <p>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 한다.</p> <p>1. 법 제48조의 규정에 ----- 1.2배 이하.</p> <p>2. 법 제51조의 규정에 ----- 1.2배 이하</p> <p>제4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 --- 별표 3과 같다.</p> <p>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등) ①법 제69조의2제1항의 단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부과한다.</p> <p>②법 제69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p> <p>③ (생략)</p> <p>1. ~ 5. (생략)</p> <p>④영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3으로 한다.</p> <p>[별표 3]</p> <p>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띄어야 할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생략)</td> <td>·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td> </tr> <tr> <td>나. (생략)</td> <td>·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td> </tr> <tr> <td>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생략)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	나. (생략)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미터 이상	<p>④ (생략)</p> <p>제3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 로 한다.</p> <p>제3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용) ①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 한다.</p> <p>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 한다.</p> <p>1. ~ 5. (생략)</p> <p>③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 한다.</p> <p>1. 법 제56조의 규정에 ----- 1.2배 이하.</p> <p>2. 법 제60조의 규정에 ----- 1.2배 이하</p> <p>제4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 --- 별표 3과 같다.</p> <p>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등) ①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동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로서 영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부과한다.</p> <p>②법 제80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 한다.</p> <p>③ (삭제)</p> <p>1. ~ 5. (삭제)</p> <p>③영제115조의2제2항 및 영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p> <p>[별표 3]</p> <p>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건축물</th> <th style="text-align: center;">띄어야 할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현행과 같음)</td> <td>·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미터 이상</td> </tr> <tr> <td>나. (현행과 같음)</td> <td>·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미터 이상</td> </tr> <tr> <td>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3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현행과 같음)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현행과 같음)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미터 이상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생략)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																
나. (생략)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0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미터 이상																
대상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현행과 같음)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현행과 같음)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이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미터 이상																

현행		개정안	
<p>1,000㎡ 이상인 시설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p>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p>	
<p>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p>	<p>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미터 이상 가)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라)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바)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사) 수련시설</p>	<p>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 수련시설 	<p>3미터 이상</p>
<p>마. 공동주택</p>	<p>가) 아파트 : 3미터 이상 나)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p>	<p>마. 공동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p>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p>	<p>가)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3미터 이상</p>	<p>바. 그 밖의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3미터 이상 	

현행		개정안	
	다)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이상		· 위(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정 하지 아니한 모든 건축 물(2006년 5월 9일전 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 도변경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생략)	(생략)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생략)	(생략)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 숙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 원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생략)	다.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인 판매시설, 숙박시 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미터 이상 가) 초등학교법, 고등교육 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 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라)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 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 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바)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사) 수련시설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 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을 제외한다. · 초등학교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 한 학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 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 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 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 수련시설	2미터 이상

현행		개정안	
<p>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p>	<p>가) 아파트 : 3미터 이상 나)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p>	<p>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p>	<p>·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p>
<p>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p>	<p>가)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1.5미터 이상 다) 그 밖의 건축물 : 0.5미터 이상</p>	<p>바. 그 밖의 건축물</p>	<p>·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1.5미터 이상 · 위(가옥 내지 바깥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정하지 아니한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p>